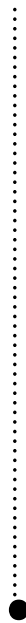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292회 임시회(2017. 5. 12 ~ 5. 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제292회 임시회를 개최
하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희망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인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대선
도전에 최선을 다하고 도정에 복귀한 김관용 도지사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방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중앙에 알린 용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도지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도정을 하나하나 더 챙겨서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신정부는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인식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과감히 실천해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대개조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게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시점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3백만 도민들

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5월 중순에 다다랐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도민들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은 국비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치열한 논리개발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비 11조 원대의 목표달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모내기 등 농사준비가 한창입니다. 적극적인 농촌 일손 돕기와 내실 있는 영농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최우선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5일은 서른여섯 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6
IV. 민원처리	17
V. 본회의 보고사항	19
VI. 5분 자유발언	23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23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6
☐ 이흥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9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33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6

부 록

☐ 조	례	안(23건)		41
☐ 예	산	안(1건)		177
☐ 동	의	안(1건)		182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92회 임시회는 2017년 5월 12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월 2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8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5월 12일(금)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3명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금) 11시에 개의하여 2명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도민들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도민의 뜻을 최우선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293회 정례회로 2017년 6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7년 5월 12일(금)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7년 5월 12일 ~ 5월 26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65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0	1	1	1	1	1	1	2	1	1
누 계	343	28	43	44	37	33	35	36	54	33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2(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이흥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건처리 ○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5. 26(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안건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6(금) 11:00 (제2차)	○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3(금) 15:25 (제1차)	☐ 안전처리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회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5(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조례안 ○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5(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5(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5(월) 11: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 위원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5(월) 11:1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5(월) 14:1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16(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4(수) 14:00 (제1차)	☐ 안건처리 ○ 21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2(금) 11:00 (제1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	

Ⅲ. 의안처리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부의)	처 리 (가+나+다)	의 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32 (614)	32 (614)	30 (598)	26 (530)	3 (66)	1 (2)		0 (9)	2 (7)	
조 례 안	소 계	25 (380)	25 (380)	24 (365)	22 (320)	1 (43)	1 (2)		0 (9)	1 (6)	
	의 회 제 안	19 (207)	19 (207)	18 (195)	18 (171)	0 (24)			0 (6)	1 (6)	
	도지사 제 출	3 (119)	3 (119)	3 (118)	3 (104)	0 (14)			0 (1)		
	교육감 제 출	3 (54)	3 (54)	3 (52)	1 (45)	1 (5)	1 (2)		0 (2)		
규 칙 안		1 (5)	1 (5)	0 (5)	0 (5)						
예산 · 결산		1 (28)	1 (28)	1 (28)	(15)	1 (13)					
동의 · 승인		1 (51)	1 (51)	1 (50)	(40)	1 (10)				0 (1)	
건 의 안		0 (2)	0 (2)	0 (2)	0 (2)						
결 의 안		0 (25)	0 (25)	0 (25)	0 (25)						
기 타 안		4 (123)	4 (123)	4 (123)	4 (123)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78)	(35)	(8)	(2)	(17)	1 (4)	2 (6)	(4)		(2)
의 회 운 영	(2)	(2)								
기 경 획 제	2 (7)	(3)					2 (4)			
행 정 보 건 복 지	(12)	(6)	(4)		(1)		(1)			
문 화 환 경	(11)	(5)	(4)					(2)		
농 수 산	(3)	(2)					(1)			
건 설 소 방	(32)	(11)		(2)	(16)			(2)		(1)
교 육	1 (10)	(5)				1 (4)				(1)
특 별 위 원 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77)	3 (76)	(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2 (7)	2 (7)				
행 정 보건복지	1 (12)	1 (12)				
문화환경	(11)	(11)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32)	(31)	(1)			
교 육	(9)	(9)				1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28건(조례안 25, 예산안 1, 동의안 등 2)

2. 처리안건 : 25건

- 가결 의안 : 25건(조례안 23, 예산안 1, 동의안 1)
- 부결 의안 : 1건(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 : 2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안접수 내용

- 23건 : 【조례안 23】
- 1건 : 【예산안 1】
- 1건 : 【동의안 1】

연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비 고
1	도지사 (2017. 5.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	도지사 (2017. 5.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3	이흥희 의원 외 12명 (2017. 5. 1)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4	이동호 의원 외 15명 (2017. 5. 1)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조례안

연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비 고
5	박현국 의원 외 14명 (2017. 5. 1)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조례안
6	김희수 의원 외 35명 (2017. 5. 1)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조례안
7	윤창욱 의원 외 6명 (2017. 5. 1)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조례안
8	김인중 의원 외 16명 (2017. 5. 1)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안
9	도지사 (2017. 5. 1)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안
10	이정호 의원 외 14명 (2017. 5. 1)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안
11	장대진 의원 외 11명 (2017. 5. 1)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2	한창화 의원 외 14명 (2017. 5. 1)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
13	조주홍 의원 외 13명 (2017. 5. 1)	경상북도 대계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4	이수경 의원 외 2명 (2017. 5. 1)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5	윤종도 의원 외 15명 (2017. 5. 1)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
16	김수문 의원 외 9명 (2017. 5. 1)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7	배진석 의원 외 20명 (2017. 5. 1)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8	한혜련 의원 외 9명 (2017. 5. 1)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9	박정현 의원 외 9명 (2017. 5. 1)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0	김희수 의원 외 32명 (2017. 5. 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조례안
21	김지식 의원 외 9명 (2017. 5. 1)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2	교육감 (2017. 5. 1)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연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비 고
23	교육감 (2017. 5.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24	교육감 (2017. 5.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안
25	교육감 (2017. 5.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4. 조례 공포 사항 : 23건

연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	2017. 5. 26	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24호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25호
3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12 제3926호
4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조례	2017. 6. 12 제3927호
5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2017. 6. 12 제3928호
6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6. 12 제3929호
7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 6. 12 제3930호
8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6. 12 제3931호
9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32호
10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33호

연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1	2017. 5. 26	도지사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34호
12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6. 12 제3935호
13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12 제3936호
14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 대책특별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37호
15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	2017. 6. 12 제3938호
16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6. 12 제3939호
17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2017. 6. 12 제3940호
18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41호
19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12 제3942호
20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6. 8 제3920호
21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8 제3921호
22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8 제3922호
2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6. 8 제3923호

VI. 5분 자유발언

□ 2017년 5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도립대학 곤충산업과 신설 관련》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도립대학에 곤충학과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곤충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면서 곤충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곤충은 양봉, 양잠, 약용으로만 일부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업·식용·의학·사료용 곤충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대체식량 및 의약산업 분야에서 곤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하고 있습니다. 유엔 농업식량기구는 식용곤충을 미래식량으로 지목했으며, 세계 곤충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무려 3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곤충시장 규모는 3,000억 원이 넘어 파프리카, 복숭아를 앞설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고, 곤충사육농가는 724호이며, 이 중 경북은 109호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에는 곤충산업 규모가 약 5,000여 억 원, 사육농가 수는 1,200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예천곤충연구소 설립,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개최, 국내 유일의 예천곤충산업특구 지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곤충산업화 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곤충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은 대체식품산업, 농수산업, 의약산업 등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농업인의 소득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미래 곤충산업 핵심 거점으로서 성장과 6차 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곤충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명실상부한 곤충산업의 중심인 예천에 소재한 경북도립대학에 곤충산업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남 나주의 고구려대학교는 2016년 전문 곤충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15명 정원의 2년제 곤충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곤충산업과에서는 일반곤충학, 산업곤충학, 식용곤충학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곤충조리실습 등의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곤충연구소, 곤충산업회사, 식용곤충회사 등으로 취직하거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이 성장하면 곤충산업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곤충을 사육·가공·판매·서비스하는 곤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곤충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곤충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경북도립대학이 내실을 다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곤충산업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도립대학이 협의해서 곤충산업과 신설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5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구미지역 단성학교 남녀공학 전환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 지역의 중학교 원거리 배정으로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구미 지역에는 48개 초등학교와 27개 중학교가 있으며 4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는 4,209명이며, 27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388명으로 정원상 진학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있어 집 앞의 학교를 두고서, 걸어서 5~10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중학교를 배정받아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구미 원평동에 위치한 금오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졸업생은 남학생 96명, 여학생 94명 등 총 190명으로 여학생의 53%인 50명은 금오초에서 800m 거리의 구미여중에 배정되었으나 남학생의 91%인 87명은 금오초에서 4km 이상 떨어진,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형곡동의 형남중, 형곡중, 광평동의 광평중학교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남통동에 위치한 원남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졸업생은 남학생 44명, 여학생 68명 등 총 112명으로 여학생 중 80%인 54명은 원남초등학교에서 1.7km 떨어진 구미여중으로 배치되었으나 전체 남학생의 57%인 25명은 5km 이상 떨어진,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형남중학교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의 구미지역 단성중학교 배치 결과를 분석하여도 위 사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결국 졸업한 초등학교 인근의 중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는 불합리한 점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남중, 여중이라 불리는 단성학교가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학교 통학거리에 있어 성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즉, 성별에 따른 차별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시 다양성에 기반한 성평등·인성·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며, 참여형·

협력형 수업이 원활해지고 이성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인근 학교로의 배치를 통해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학부모의 통학부담 완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미의 원평동, 형곡동, 남통동 지역처럼 단성학교 진학에 따른 통학 거리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도내 전 지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상급학교 진학에서 원거리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구미지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중학교는 25.6명, 고등학교는 30.4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미 도심지역 학교의 경우 34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 수 과밀은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세심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5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흥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이흥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의 구미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이자 수출산업의 1번지로 국가 수출을 주도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북과 국가의 수출입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구미의 수출은 연평균 8.1%나 감소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 모바일 수출의 경우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6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9%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의 경우 2011년 62억 달러에서 2016년 50억 달러로 연평균 4.3% 감소하였습니다.

〈표〉 구미지역 주력산업 수출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성장률
모바일	7,881	6,819	7,912	6,885	5,358	4,915	-9.0%
디스플레이	6,199	8,294	8,219	7,195	6,469	4,978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각 연도

주 : 모바일은 MTI 8121(무선전화기), 디스플레이는 MTI 8361(평판디스플레이) 활용

이로 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도 2014년 기준으로 11만 9,000명이었으나 2017년 1월 기준으로 9만 1,000명에 그치는 등 3년 사이에 1만 8,000명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비단 구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창원, 울산 등 과거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 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첨단기술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업도시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몰락한 조선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이제 제조업 위기는 지역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어렵고, 특히 이러한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관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은 향후에 발표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부처 차원의 규제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서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신청지역에 대한 선정과정을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휴·폐업과 실직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의 산업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법령개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수렴 및 중앙에 건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위기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향후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 지역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7년 5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노출
되어 있는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
어나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창조기술의 극치 중 하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기술로 받는 혜택만큼 그 부작용은 인간성 상실로까지 나타
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에는 스마트폰 음란
채팅으로 청소년이 자살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을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본 의원의 지역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게임 중독에 빠져 꾸지람하는 부모 대신에 자신을 키우는 고모를 살해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불법 게임에 중독된 17세 고교 중퇴 청소년이 자고 있는 누나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끔찍한 사건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 중독에 걸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의력 결핍, 집중력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일 밤을 새다보면 건강이 쇠약해져 심리적 불안상태가 계속되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는 등 대화가피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고위험 사용자군은 86만 명이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49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해서 경북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도교육청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들을 맡고 우리 경상북도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가정, 도내 공공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각각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정보통신윤리 교육이나 이벤트성 행사로는 더 이상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든 기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정보화 역기능은 인간이 만든 기술적 안전조치로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더 한층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을 통해 경북을 게임 중독 없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구역의 산실로 만드는 데 앞장섭시다. 그리하여 경북의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힘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7년 5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경북 지방법원 및 검찰청 신설 촉구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신도청시대가 개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소 더디기는 하지만 유관기관들도 하나둘씩 이전해 오면서 도정역량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중 사법부문인 법원의 서비스는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5개의 고등법원은 18개의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대전고등법원에는 2개,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는 각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만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경북과 대구 전역을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해온 까닭에 오랜 세월 경북도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왔습니다. 일례로 울진지역

도민이 대구지방법원의 업무를 보려면 약 200km를 운전하거나 대중 교통으로 약 3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므로 단순 왕복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신도시에서조차도 대구지방법원을 다녀오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와 사건이 너무 과중해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상존해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경북과 대구의 인구는 약 52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1%에 달합니다. 또한 2016년도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은 약 1만 1,000여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8.5%에 달합니다. 즉,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 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시기에 윤갑근 대구고검장 또한 경북지방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주지하는 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한 결과, 2019년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은 옹도 경북의 위상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학계, 교육계, 법조계, 지역 정치권 등 도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선두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23건)		41
☐ 예	산	안(1건)		177
☐ 동	의	안(1건)		182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5. 1)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5. 1)
-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흥희 의원 외 12명(2017. 5. 1)
-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동호 의원 외 15명(2017. 5. 1)
-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박현국 의원 외 14명(2017. 5. 1)
-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희수 의원 외 35명(2017. 5. 1)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윤창욱 의원 외 6명(2017. 5. 1)
-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인중 의원 외 16명(2017. 5. 1)
-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5. 1)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호 의원 외 14명(2017. 5. 1)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대진 의원 외 11명(2017. 5. 1)
-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창화 의원 외 14명(2017. 5. 1)
-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주홍 의원 외 13명(2017. 5. 1)
-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경 의원 외 2명(2017. 5. 1)
-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윤종도 의원 외 15명(2017. 5. 1)
-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수문 의원 외 9명(2017. 5. 1)
-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배진석 의원 외 20명(2017. 5. 1)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혜련 의원 외 9명(2017. 5. 1)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현 의원 외 9명(2017. 5. 1)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희수 의원 외 32명(2017. 5. 1)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식 의원 외 9명(2017. 5. 1)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7. 5. 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7. 5.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491명”을 “5,6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332명”을 “3,491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중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를 “8명(1급 1, 3급 1, 5급 1, 6급 1, 7급 4)”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합 계			5,650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866	-				
	1급		1					1
	2 ~ 3급		2	1	1			
	3 급		11	9		1		1
	3 ~ 4급		2	2				
	4급		82	60	7	5	10	
	5급 이하		1,755	-				
	전문경력관		13	-				
별 정 직	소 계		15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1	2			
	5급 상당 이하		11	-				
연 구 직	소 계		206	-				
	연구관		41			40	1	
	연구사		165	-				
지 도 직	소 계		28	-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				
소 방 직	소 계		3,491	-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468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49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332명 3. ~ 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_____ _____ <u>5,650명</u> _____ —.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 3,491명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한시정원) 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u>< 삭제 ></u>																												
[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 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9급</th><th>전문 경력관</th></tr><tr><td>비율</td><td>6% 이내</td><td>19% 이내</td><td>32% 이내</td><td>34% 이내</td><td>8% 이상</td><td>1% 이내</td></tr></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비율	6% 이내	19% 이내	32% 이내	34% 이내	8% 이상	1% 이내	[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 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9급</th><th>전문 경력관</th></tr><tr><td>비율</td><td>6% 이내</td><td>19% 이내</td><td>32% 이내</td><td>34% 이내</td><td>8% 이상</td><td>1% 이내</td></tr></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비율	6% 이내	19% 이내	32% 이내	34% 이내	8% 이상	1%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비율	6% 이내	19% 이내	32% 이내	34% 이내	8% 이상	1%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비율	6% 이내	19% 이내	32% 이내	34% 이내	8%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8명(1급 1, 3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현행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직급별						
합 계	5,491			-		
:						
소 계	1,865					
일 반 직						
2~3급	2	1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83	61	7	5	9	1
5급 이하	1,754					
전문경력관	13					
: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직급별						
연구직						
소 계	208					
연구관	41			40	1	
연구사	167					
지도직						
소 계	27					
지도관	10			10		
지도사	17					
소방직						
소 계	3,332					
소방정	22	5		17		
소방령 이하	3,310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원(명)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8. 31.	

개정안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직급별						
합 계	5,650			-		
:						
소 계	1,866					
일 반 직						
1급	1					1
2~3급	2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82	60	7	5	10	
5급 이하	1,755					
전문경력관	13					
: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직급별						
연구직						
소 계	206					
연구관	41			40	1	
연구사	165					
지도직						
소 계	28					
지도관	10			10		
지도사	18					
소방직						
소 계	3,491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468					
:						

<삭 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도청신도시본부”를 “동해안발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진흥, 항만물류 및 독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6절의 제목 “종합건설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및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59조 중 “종합건설사업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357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을 “농축산유통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를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황산로 67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상산로 322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별표 3]

건설사업소의 명칭·위치(제58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건강국·건설도시국·<u>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도청신도시본부</u>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항만물류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청신도시본부) 도청신도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청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청신도시 유관기관 이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 ----- 동해안발전본부 ----- -----. 제7조(창조경제산업실) ----- -----. 1. ~ 4. (현행과 같음) 5.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 -----.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진흥, 항만물류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

현행	개정안
3. 그 밖에 단지조성, 기반시설, 주택·택지분양 등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 제6절 <u>종합건설사업소</u> 제58조(설치) 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합건설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종합건설사업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에 둔다. 제59조(소장) 종합건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하부조직)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 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573호, 2014. 10. 2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절 <u>건설사업소</u> 제58조(설치) 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및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59조(소장) <u>사업소</u>----- ----- ----- -----. 〈삭 제〉 부칙(조례 제3573호, 2014. 10. 27.) 〈삭 제〉

현행	개정안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2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td><td></td><td>⋮</td></tr><tr><td>경산소방서</td><td>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td><td><u>경산시 일원</u> <u>청도군 일원</u></td></tr><tr><td>⋮</td><td></td><td>⋮</td></tr><tr><td>영덕소방서</td><td>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td><td>영덕군 일원</td></tr><tr><td><u>〈신설〉</u></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u>〈신설〉</u>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	<u>경산시 일원</u> <u>청도군 일원</u>	⋮		⋮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u>〈신설〉</u>			⋮		⋮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2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td><td></td><td>⋮</td></tr><tr><td>경산소방서</td><td>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td><td><u>경산시 일원</u></td></tr><tr><td>⋮</td><td></td><td>⋮</td></tr><tr><td>영덕소방서</td><td>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td><td>영덕군 일원</td></tr><tr><td><u>청도소방서</u></td><td><u>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u></td><td><u>청도군 일원</u></td></tr><tr><td>⋮</td><td></td><td>⋮</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	<u>경산시 일원</u>	⋮		⋮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u>청도소방서</u>	<u>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u>	<u>청도군 일원</u>	⋮		⋮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	<u>경산시 일원</u> <u>청도군 일원</u>																																									
⋮		⋮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u>〈신설〉</u>																																											
⋮		⋮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	<u>경산시 일원</u>																																									
⋮		⋮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u>청도소방서</u>	<u>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u>	<u>청도군 일원</u>																																									
⋮		⋮																																									
	[별표 3] <u>건설사업소의 명칭·위치</u> (제58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r><tr><td><u>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u></td><td><u>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u></td></tr><tr><td><u>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u></td><td><u>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u></td></tr></table>	명칭	위치	<u>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u>	<u>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u>	<u>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u>	<u>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u>																																				
명칭	위치																																										
<u>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u>	<u>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u>																																										
<u>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u>	<u>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u>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 “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등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국방·자동차·건설기계·조선해양·전기

전자·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지원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산업 업무담당 실·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4. 탄소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산업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
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공급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설치 등 농어촌마을의 가스 사용편의성 증대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LPG공급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약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하고,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 2 장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본부·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단지 개발사업 담당부서 단·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문화재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희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 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팀장과 구성원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서면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 3 장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본부·국장 :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 「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3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 단·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판단 될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경미한 사항(변경사항 포함)의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 ②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단체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공개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심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제6조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 관련 자문한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의 인·허가 절차는 이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 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편의지원 및 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적용 배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시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과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u>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 ----- ----- ----- ----- <u>무상으로 대부</u> <u>할 수 있다.</u>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의 “장기 등”을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로 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를 “법”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8조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티브이(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④ 도지사는 위촉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의 조명 및 같은 조 제1항, 제8조의 조명과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9조의 조명 및 같은 조 제1항, 제10조, 제11조의 “장기 등”을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u>장기 등</u>”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u>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생략) 3. “<u>장기 등 기증자</u>”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4. “<u>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u>”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u>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u>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u>”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u>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장기등</u>”(이하 “<u>장기</u>”라 한다)--- ----- ----- ----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이하 “<u>법</u>”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u>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u>”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u>장기 및 인체조직</u>”----- ----- <u>장기 및 인체조직</u> ----- 법 ----- -----. 5. “<u>장기기증 접수창구</u>”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현행	개정안
<u>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u> (신설)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 녀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 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장기</u>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장기 및 인체조직 ----- -----.
제4조(장기 등의 기증 장려 계획 수립) <u>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제4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u>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u>

현행	개정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u>장기</u>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u>장기 및 인체조직</u>----- ----- ----- -----. ②~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 등의 기증 접수·등록 창구 설치) ①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운영을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장기 및 인체조직 ----- ---) ① ----- 장기 및 인체조직 ----- ----- 장기 및 인체조직 ----- ----- -----.

현행	개정안
1.~2.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8조(장기 등의 기증 사업 홍보) ① 도지사는 <u>장기 등의 기증</u>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3. (생략) 4. 그 밖에 <u>장기 등의 기증</u>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또는 공간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u>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u> 4. <u>그 밖에 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장기 및 인체조직-----) ① ----- <u>장기 및 인체조직</u>----- -----. 1.~3. (현행과 같음) 4. ----- <u>장기 및 인체조직</u>----- ----- ② 도지사는 <u>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u>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u>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u> 1. <u>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티브이 (TV) 공익광고 출연</u> 2. <u>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 행사 참여</u>

현행	개정안
(신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④ 도지사는 위촉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 등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장려 활동 증진을 목적 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장기 및 인체조직----- -----) ① ----- 장기 및 인체조직의 ----- ----- ----- -----. ②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등의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 --- 장기 및 인체조직----- ----- ----- -----.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 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장기 및 인체 조직----- -----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에 관한 사업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생활문화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 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 범위)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업무담당국장
 2. 도 교육청 업무담당국장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구분·운용)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기부금품
3. 기타 수입금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지역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위원회 및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지원에 따른 절차·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재단 출연)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또는 운영하고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관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국장
2. 기금출납원 : 예술담당사무관

제 6 장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2조(설치) 기금의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로 본다.

제3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기금의 유효기간) 제24조의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5장(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6장(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②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종자생산업”이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친어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를 저해 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형 대게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 포획하는 “게”류를 말한다.
2. “자율감시활동”이란 대게를 불법 포획 및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민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 자원보호를 위한 계도, 홍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율감시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
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감시선”이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

하는 어선을 말한다.

제3조(추천범위)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추천범위는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및 어선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어선

제4조(지정권자)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한다.

제5조(지정기간)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게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이하 “불법어업 등”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대게조업 구역 감시체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대게 불법어업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자율감시선 운영
4.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파급 및 홍보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불법어업 등의 신고포상) ① 누구든지 대게 불법어업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어업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도, 시·군, 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등 단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법어업 등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게자원 보호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율감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대게자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자율감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대게자원 보호 및 자율감시 시책의 홍보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대게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감시활동 장려,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도지사는 제7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분과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0인”을 “10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을
“농수산업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촌인력양성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각 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9조 제목 “분과위원회”를 “정책연구 T/F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촌인력양성분과위원회, 농수산연구개발분과위원회 등”을 “정책연구 T/F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정책연구 T/F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원·육성”을 “지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전문연구위원”을 삭제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를 “정책연구 T/F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1.~7. (생략)	제3조(기능) ----- 각 호----- ----- ---. 1.~7.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분과</u>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 등 <u>6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u>농수산국장</u> 및 <u>농업기술원장</u>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구성) ① ----- <u>당연직</u> 위원----- ----- ----- <u>100인</u> -- -----. ② ----- ----- --- <u>사람</u>-----. ③ ----- <u>농수산업을 주관</u> 하는 <u>국장 또는 본부장, 농업기술원장</u>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u>농촌인력양성 분과위원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위원 중 도지사가</u>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 (생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생략) ③~④ (생략) 제8조(상임위원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농촌인력양성분과위원회, 농수산연구개발분과위원회</u>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u>전문연구위원</u>을 둘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u>지원·육성</u>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각 호----- -----. 1.~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임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 ----- 15명----- ----- -----. 제9조(정책연구 T/F팀) ① ----- ----- 정책연구 T/F팀----- ----- -----. ② 정책연구T/F팀장----- -----. ③ (삭제)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 ----- ----- -----.

현행	개정안
제13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장,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 <u>전문연구위원</u> , 위원회소속직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보수·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 (삭제)----- ----- <u>범위</u> <u>에서</u> ----- -----.
제14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u>분과위원회</u>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규정) ----- ----- <u>정책연구 T/F팀</u> ----- -----.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3278호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3278호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중앙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1. 9. 26>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개정 '11. 9. 26>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이내

③ 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4조의 각호의 사항과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심의회에서 심의 조정을 요구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에 농업경영전문위원회, 작물(식량작물)전문위원회, 특용작물전문위원회, 원예(채소)전문위원회, 과수전문 위원회, 화훼전문위원회, 식물환경(토양비료)전문위원회, 작물보호 전문위원회, 농산물이용전문위원회, 농촌지도전문위원회, 축산전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역 농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과 전문위원은 당해 전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심의회에서 추천된 자를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전문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과 검직 연구·지도관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별로 심의한다.

제7조(전문위원장의 직무 등) ①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전문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촉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1. 9. 26>

제8조(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공무원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회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11. 9. 26>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3278호, 2011.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진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2.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 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 지원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① 원인조사를 실시한 원인조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 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 기준 (제3조 관련)

전문 분야	기 준	비 고
지진현상규명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1.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이 필요할 때 전문 분야별로 편성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구성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할 것 (예 : 원자력·항만시설 등이 없는 지역인 경우 이 분야 전문가는 명부를 작성할 필요 없음) 2. 대구·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건축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교통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산업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통신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수리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원자력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항만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지반·토목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I. 조사 개요

- 가. 목적
- 나. 조사기간
- 다. 조사지역
- 라. 조사단

II.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 나. 원인분석

III.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IV. 최종결과보고 방향

- * 재해 피해 상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I. 조사 개요

- 가. 목적
- 나. 조사기간
- 다. 조사지역
- 라. 조사단
- 마. 주요 조사내용

II. 지진현황 및 특성

- 가. 경상북도의 지진현황
-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III. 현장조사 결과

- 가. 지진피해 총괄
- 나. 현지조사 내용
 - 1. 시설별 피해 내용
 - 2. 지역별 피해 내용
-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IV.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V. 결언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부록 : 화보

* 재해 피해 상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 기구를 말한다.
8. “관리규약”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치규약을 말한다.
9.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 수	총 : 명 (남 : 명 / 여 : 명)	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사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			
감사 요청 사항 · 사유	※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연번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의

-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설치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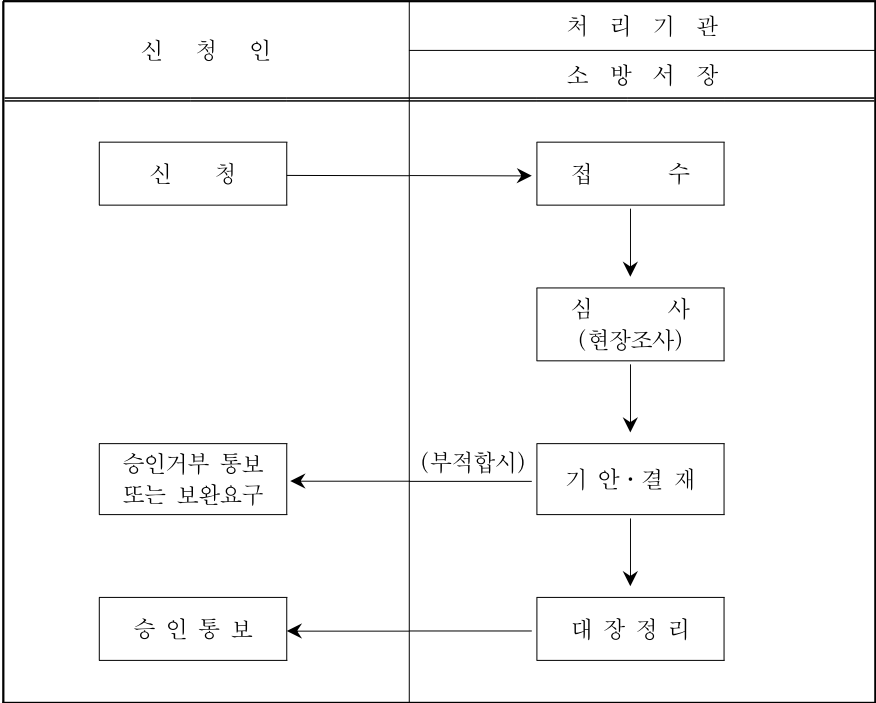
(앞쪽)

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상 호 (명 칭)							
설치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설 치 장 소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시 설 의 구 분							
위험물의 유별 · 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배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							
작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성 명 서명(인)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승인연월일 승인번호					

(뒤 쪽)

-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등란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기재한다.
3. 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 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 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 .>

제 호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

상 호 (명 칭) :

설치자(대표자)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설치(차고지)장소 :

저 장 · 취 급 내 역

시설구분	유 별	품 명	최대저장량	소화설비	비고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서 장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u>별지서식</u>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u>별지서식</u>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2. (생략) ③~⑤ (생략)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 ----- <u>별지 제1호서식</u> ----- ----- -----. ② ----- ----- ----- ----- <u>별지 제2호서식</u>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50

현행	개정안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4.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별표 2의 “비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7. 5.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근거 법규 조항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	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세의 부과·징수에 예에 따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근거 범규 조항
불피움 또는 연막 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	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비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 표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삭 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의 내용)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학부모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제10조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학원 등의 교습시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한다.

별표2의 “33. 이용·미용(미용)”란 중 “시설·설비 및 교구”에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33. 이용·미용 (미용)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 가) 실습대(1인용) 10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 세트 3조 이상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1. (생략) 〈신설〉 2.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①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 ----- ② (생략)	제10조(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교습과정</th><th style="width: 70%;">시설·설비 및 교구</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r> <td>33. 이용· 비용 (비용)</td><td>나. 시설 및 교구 1) (생략) 2) (생략) 〈신 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able>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생략)	(생략)	33. 이용· 비용 (비용)	나. 시설 및 교구 1) (생략) 2) (생략) 〈신 설〉	(생략)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교습과정</th><th style="width: 70%;">시설·설비 및 교구</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r> <tr> <td>33. 이용· 비용 (비용)</td><td>나. 시설 및 교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 가) 실습대(1인용) 10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 세트 3조 이상</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r> </table>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 이용· 비용 (비용)	나. 시설 및 교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 가) 실습대(1인용) 10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 세트 3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생략)	(생략)																
33. 이용· 비용 (비용)	나. 시설 및 교구 1) (생략) 2) (생략) 〈신 설〉																
(생략)	(생략)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 이용· 비용 (비용)	나. 시설 및 교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메이크업, 네일아트과정 가) 실습대(1인용) 10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 세트 3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4]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4]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제12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운영	1) ~ 18)	(생략)			바. 운영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19)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u>〈신 설〉</u>					20)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운영	1) ~ 13)	(생략)			바. 운영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아동학대 행위	폐지		
	<u>〈신 설〉</u>					15)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3항 위반(개인과의교습소)					3. 법 제17조제3항 위반(개인과의교습소)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 설〉</u>					바. 아동학대 행위		중지		
<u>〈신 설〉</u>					사. 주거지 개인과의 교습자 표시 미부착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중지
<u>〈신 설〉</u>					아. 교습비 등 미 게시·표시 (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중지
<u>〈신 설〉</u>					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별표 4]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가. 시설	1) 시설 기준 미달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 변경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위치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4) 등록된 시설 무단 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나. 설립·운영자	1)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설립·운영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등록말소		
	3)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다. 교습비 등	1) 교습비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나) 100% 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 교습비등 미등록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5) 교습비등 광고물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라. 강사 등	1)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또는 해임 미등록과 미통보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거짓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 또는 생활지도담당인력 미배치		교습정지	등록말소	
마. 교습 과정	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구 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운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말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등록말소		
	4) 무단 명칭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5) 등록증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 학원에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9) 취업알선 등을 방자한 금품편취	교습정지	등록말소	
	1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거짓·과대광고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거짓 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환경 불량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독서실 남·녀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7)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 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19)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20)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구 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교습정지	등록말소		
아. 연수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 교육 불참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가. 시설	1) 위치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지		
나. 교습자	1) 교습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폐지		
	2) 교습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폐지			
	3) 성범죄경력미조회(직원 등)	경고	교습정지	폐지	
다. 교습비 등	1) 교습비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정지	폐지
		나) 100% 이상	교습정지	폐지	
	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게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정지	폐지	
	4) 교습비등 미등록	경고	교습정지	폐지	
	5) 교습비등 광고물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6)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폐지	
	7)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지		
라. 강사	강사 무단 채용	교습정지	폐지		
마. 교습 과정	1)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폐지	
	2) 교습시간 연장운영	경고	교습정지	폐지	
바. 운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교습을 정지한 경우	폐지			
	3) 무단 명칭 변경	교습정지	폐지		
	4)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구 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운영	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폐지
	6)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교습정지	폐지	
	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교습정지	폐지
	8) 거짓·과대광고	경고	교습정지	폐지
	9) 환경 불량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폐지
	1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폐지
	11)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경고	교습정지	폐지
	1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경고)	교습정지	폐지
	13)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14) 아동학대 행위	폐지		
	15)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교습정지	폐지	
	2)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지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지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교습정지	폐지	
아. 연수	교습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 교육 불참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경고	교습정지	폐지

구 분	위 반 사 항	반복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법 제17조 제3항 위반(개인과외교습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중지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정지	중지	
다.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정지	중지	
라.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중지
마. 교습비 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정지	중지
	나) 100% 이상	교습정지	중지	
바. 아동학대 행위		중지		
사.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중지
아. 교습비 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게시·표시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중지
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리관, 채권(무)관리관”을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센티미터) <table><tr><th>구 분</th><th>한변의 길이</th></tr><tr><td>청 인</td><td>합의제 기관(각종 위원회의 청인) 3.6</td></tr><tr><td rowspan="4">직 인</td><td>교육감 2.7</td></tr><tr><td>교육장 2.4</td></tr><tr><td>4급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td></tr><tr><td>6급 ·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td></tr><tr><td rowspan="2">(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td><td>경수관, 경리관, 채권(무)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 2.0</td></tr><tr><td>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1.8</td></tr></table>	구 분	한변의 길이	청 인	합의제 기관(각종 위원회의 청인) 3.6	직 인	교육감 2.7	교육장 2.4	4급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	6급 ·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경수관, 경리관, 채권(무)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 2.0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1.8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 ----- -----.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센티미터) <table><tr><th>구 분</th><th>한변의 길이</th></tr><tr><td>청 인</td><td>----- ----- -----</td></tr><tr><td rowspan="4">직 인</td><td>----- ----- ----- ----- -----</td></tr><tr><td>(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 ----- ----- -----</td></tr></table>	구 분	한변의 길이	청 인	----- ----- -----	직 인	----- ----- ----- -----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 ----- ----- -----
구 분	한변의 길이																			
청 인	합의제 기관(각종 위원회의 청인) 3.6																			
직 인	교육감 2.7																			
	교육장 2.4																			
	4급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																			
	6급 ·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경수관, 경리관, 채권(무)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 2.0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1.8																			
구 분	한변의 길이																			
청 인	----- ----- -----																			
직 인	----- ----- ----- -----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 -----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5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94명”을 “5,2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897명”을
“4,86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총 계	5,264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64	-			
3 급	3		3		
3~4급	5		5		
4 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831	-			
전문경력관 소계	6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93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5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년 5월 15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 제안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 [별표 3]에서 3~4급 '5명'을 '4명'으로, 5급 이하 '4,831명'을 '4,832명'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총 계	5,264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64	-			
3 급	3		3		
3~4급	4		4		
4 급	-	1	17	1	
5급 이하 소계	4,832	-			
전문경력관 소계	6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93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5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계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별표 3]		[별표 3]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 학교	특별 학교
총 계	5,294	1	1	1			
정무직 계	1	1	1	1			
교육감	1	1	1	1			
일반직 계	4,894	-	-	-	-	-	-
3 급	3	3	3				
3~4급	4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862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6	-	-	-	-	-	-
연구직 계	6	-	-	-	-	-	-
연구사	6	-	-	-	-	-	-
특정직 계	383	-	-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	24	2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5	-	-	-	-	-	-

▣ 예 산 안 ▣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3. 주요내용

□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4,356,685,888	100.0	4,001,281,144	100.0	355,404,744	8.9
1. 이전수입	3,992,215,597	91.6	3,679,285,131	92.0	312,930,466	8.5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3,578,483,366	82.1	3,281,049,400	82.0	297,433,966	9.1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7,375,432	9.4	396,730,381	9.9	10,645,051	2.7
다. 기타이전수입	6,356,799	0.1	1,505,350	0.0	4,851,449	322.3
2. 자체수입	51,860,503	1.2	36,493,394	0.9	15,367,109	42.1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28,228,857	0.6	28,228,857	0.7	0	0.0
나. 행정활동수입	989,107	0.0	966,925	0.0	22,182	2.3
다. 자산수입	8,929,000	0.2	1,272,673	0.0	7,656,327	601.6
라. 이자수입	6,020,196	0.1	6,020,196	0.2	0	0.0
마. 기타수입	7,693,343	0.2	4,743	0.0	7,688,600	162,104
3. 차입	138,948,431	3.2	192,260,354	4.8	△53,311,923	△27.7
가. 지방교육채	138,948,431	3.2	192,260,354	4.8	△53,311,923	△27.7
4. 기타	173,661,357	4.0	93,242,265	2.3	80,419,092	86.2
가. 전년도이월금	173,661,357	4.0	93,242,265	2.3	80,419,092	86.2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4,356,685,888	100.0	4,001,281,144	100.0	355,404,744	8.9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4,070,295,952	93.4	3,825,411,500	95.6	244,884,452	6.4
가. 인적자원운용	1,839,353,230	42.2	1,875,431,475	46.9	△36,078,245	△1.9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243,729,521	5.6	167,324,680	4.2	76,404,841	45.7
다. 교육복지지원	483,553,257	11.1	505,327,291	12.6	△21,774,034	△4.3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35,633,699	0.8	20,664,473	0.5	14,969,226	72.4
마. 학교행정지원관리	839,746,556	19.3	835,890,426	20.9	3,856,130	0.5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28,279,689	14.4	420,773,155	10.5	207,506,534	49.3
2. 평생·직업교육	15,047,709	0.3	12,842,348	0.3	2,205,361	17.2
가. 평생교육	7,383,759	0.2	5,780,498	0.1	1,603,261	27.7
나. 직업교육	7,663,950	0.2	7,061,850	0.2	602,100	8.5
3. 교육일반	271,342,227	6.2	163,027,296	4.1	108,314,931	66.4
가. 교육행정일반	37,468,317	0.9	33,394,833	0.8	4,073,484	12.2
나. 기관운영관리	51,937,391	1.2	49,237,620	1.2	2,699,771	5.5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56,934,366	3.6	44,473,295	1.1	112,461,071	252.9
라. 예비비 및 기타	25,002,153	0.6	35,921,548	0.9	△10,919,395	△30.4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기 금 명	변 경	당 초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55,330,576	261,103,186	△5,772,610	△2.2
공무원복지기금	6,346,779	6,346,779	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48,983,797	254,756,407	△5,772,610	△2.3
전입금	93,220,000	99,000,000	△5,780,000	△5.8
예치금회수	152,786,288	152,778,898	7,390	0.0
이자수입 등	2,977,509	2,977,509	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기 금 명	변 경	당 초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55,330,576	261,103,186	△5,772,610	△2.2
공무원복지기금	6,346,779	6,346,779	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48,983,797	254,756,407	△5,772,610	△2.3
비용자성사업비	19,830,950	11,729,774	8,101,176	69.1
융자성사업비	0	0	0	
예치금 등	229,152,847	243,026,633	△13,873,786	△5.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예산 서쪽	소관부서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비고
			편성 예산액	수정 예산액	증감액	
총계		2건	389,572	-	△389,572	
497	체육건강과	음식물쓰레기소멸기 구입비	170,000	-	△170,000	
545	칠곡교육지원청	(가칭)포남유치원 설계비	219,572	-	△219,572	
	이	하	여	백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예산 서쪽	소관부서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1건	23,901,711	24,291,283	389,572	
1	기획조정관	예비비	23,901,711	24,291,283	389,572	

＝ 동 의 안 ＝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2017. 5.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5월 26일

1. 주요내용

□ 취득재산 86,967,845천원

- 토지: 32,746㎡ 361,371천원(4건)

- 건물: 36,307㎡ 86,606,474천원(10건)

○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학교 부지 취득(2건)

-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 16,000㎡(4,840평) 무 상

- (가칭)옥계북초등학교 15,000㎡(4,537평) 무 상

○ 학생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부지 취득(1건)

- (가칭)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1,387㎡(419평) 349,524천원

○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유치원 부지 취득(1건)

- (가칭)예천유치원 359㎡(108평) 11,847천원

○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학교 건물 취득(2건)

-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 10,383㎡(3,140평) 23,045,100천원

- (가칭)옥계북초등학교 12,883㎡(3,897평) 25,500,621천원

○ 학생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건물 취득(1건)

- (가칭)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2,300㎡(696평) 8,060,000천원

○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유치원 건물 취득(2건)

- (가칭)포남유치원 1,898㎡(574평) 5,228,789천원
- (가칭)예천유치원 3,203㎡(969평) 9,750,435천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5건)

- 경북관광고등학교 1,550㎡(468평) 3,776,020천원
 (실습동 증축)
- 나원초등학교 1,153㎡(348평) 3,134,377천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 무을초등학교 822㎡(248평) 2,231,757천원
 (다목적강당 개축)
- 광평초등학교 822㎡(248평) 2,938,138천원
 (다목적강당 증축)
- 백원초등학교 1,293㎡(391평) 2,941,237천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 5. 15.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 이유

-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재산 1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 (가칭)포남유치원(신설) 취득의 건(건물 1,898㎡) 삭제

3.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재산

- 취득 재산 : 13건, 817억 3,905만 6천원
 - 토 지 : 32,746㎡, 3억 6,137만 1천원(4건)
 - 건 물 : 34,409㎡, 813억 7,768만 5천원(9건)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면적(m ²)		
계 토지 건물	9개 기관	토지 건물	13건 4건 9건	69,053 32,746 34,409	81,739,056 361,371 81,377,685	
1	(가칭) 구미강동 고등학교	토지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1012	16,000	0	신설 부지 취득 (한국수자원공사 무상 제공)
		건물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1012	10,383	23,045,100	신설 건물 취득 (24학급, 2020.3.1. 개교예정)
2	경북관광 고등학교	건물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160	1,550	3,776,020	실습동 증축
3	나원 초등학교	건물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94	1,153	3,134,377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4	(가칭) 김천학생 문화예술 센터	토지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428-1	1,387	349,524	신설 부지(국유지) 취득
		건물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696	2,300	8,060,000	신설 건물 취득
5	(가칭) 옥계북 초등학교	토지	구미시 옥계동 산79 일원	15,000	0	신설 부지 취득 (한국수자원공사 무상 제공)
		건물	구미시 옥계동 산79 일원	12,883	25,500,621	신설 건물 취득 (37학급, 2020. 3. 1. 개교예정)
6	무을 초등학교	건물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748-1	822	2,231,757	다목적강당 증축
7	광평 초등학교	건물	구미시 광평동 121	822	2,938,138	다목적강당 증축
8	백원 초등학교	건물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147	1,293	2,941,237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9	(가칭) 예천 유치원	토지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310	359	11,847	신설 부지(국유지) 취득
		건물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10-1	3,203	9,750,435	신설 건물 취득 (10학급, 2020.3.1. 개원예정)

의정 활동 보고서

(제292회 임시회)



2017. 7. 인쇄 / 2017. 7.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